[양식 제12호]

혼 인 취 소 신 고 서

※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, 선택항****** 해당번호에 "○"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수 에 대한법률구조공단

구분					남 편(부)							아 내(처)							
① 당 사 자	성 1	_,	한글	(성)	/ (명)			본			(성)	/ (명)				본			
		명	한자	(성)	/ (명)			(한자))		(성)	/ (명)				_ (한자)		
	주민등록번호				_										_				
	출생연월일																		
		등록기준지																	
	주	주 소																	
②中央〈お中央〉	부(양부)성명																		
	주민등록번호			_															
	모(양모)성명														-				
	주민등록번호						_								_				
③기 타 사 항																			
④재판확정일자 ()						년		월	ģ	일		법원명						법	원
		미성	년지	년자성명									•						
-,		주민	민등록번호					_							_				
친구 지	권자 정		친권자		1부 2모	지정 일자		Ę	1	월	일	1 2 2 足	지 ² 일 ²	정 가		년	월		일
'	0				고 3 부년		()법-	원의	결정	<u>3</u> 부모	원역		() Է	법원의	나 김	결정
⑥시기이	성 명				① 또는 서명							주민등록번호 -							
	자 격				1소 제기자 2소의상대방						3	기타(자건	북:)
	주 소									전	화			0)1	게일				
⑦제출인 /			성명	}						주딩	민등록번	호							

작 성 방 법

- ※ 등록기준지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.
- ※ 주민등록번호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 일)를 기재합니다.
- ①란: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②란: 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(본적)를 기재합니다. 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, 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(또는 출생년월일)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.
- ③란: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 - 신고사건으로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, 생년월일,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
- ⑤란: 혼인취소재판에서 지정된 친권자를 기재합니다.
- ⑦란: 제출자(신고인 여부 불문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
첨 부 서 류

- 1. 혼인취소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.
- ※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.
- 2. 혼인취소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.
- 3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]
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- *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
- 4.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: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
- ※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